

# 국외출장보고서

(투표관리제도·기법 비교연구를 통한 도입방안 연구)

202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목 차 •••

---

I. 연수개요 .....	1
II. 캐나다 투표관리 제도 등 사전 연구 .....	2
III. 세부연수내용 .....	3
① 퀘벡주 선거관리기관(Elections Quebec)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3
②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8
③ 토론토 시청 선거국(Toronto Elections)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11
④ 캐나다 연방의회 의사당 방문 및 정치제도 연구 .....	14
⑤ 퀘벡 장탈롱주 선거운동 참관 및 유권자 투표참여 인식 등 의견 청취 ..	17
IV. 선거제도 비교 및 시사점 .....	20
V. 연수 결과 평가 .....	23

## 별 지

1. 사전연구자료 .....	25
2. 수집자료 목록 .....	86

# 2023년 직원역량 강화 국외연수 결과 보고

## I 연수개요

### 1 연수목적

- 캐나다의 투표관리제도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투표관리 개선방안 모색
- 선거관리·운영 기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한 해외 투표관리 기법 비교 고찰

### 2 연수국가 : 캐나다

### 3 연수기간 : 2023. 9. 7.(목) ~ 9. 14.(목) [6박 8일]

### 4 연수대상자[총 7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경기	선 거 과	행정주사	이 일 동	팀장
	이 천 시	행정주사보	문현숙	
	양 평 군	행정주사보	장영수	
충북	제 천 시	행정주사	최설희	
	청 주 시 서 원 구	행정주사보	최종환	
충남	서 산 시	행정주사	김선필	
	공 주 시	행정주사보	박수진	

### 5 방문기관 및 참관

- 퀘벡주 선거관리기관(Elections Quebec)
-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
- 토론토 시청 선거국(Toronto Elections)
- 캐나다 연방의회 의사당
- 퀘벡 장탈롱주 선거운동 참관 및 유권자 투표참여 인식 관련 의견 청취

## 6 연수일정표

일 자	지 역	시 간	세부일정	비고
9. 7.(목)	인천 → 캐나다(토론토)		○ 캐나다 토론토 도착	
9. 8.(금)	캐나다(토론토)	오전	○ 토론토 시청 선거국 방문 및 면담	
		오후	○ 방문기관 질의회신 자료검토 및 토의 ○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담당자 면담 관련 현장 질의사항 논의(통역사와 사전 조율 포함)	
9. 9.(토)	캐나다(오타와)	오전	○ '오타와'로 이동(400km, 6시간 소요)	
		오후	○ 캐나다 연방의회 의사당 방문 및 정치 제도 연구 ○ 캐나다 선거관리청 담당자 면담 관련 현장 질의사항 논의(통역사와 사전 조율 포함)	
9. 10.(일)	캐나다(오타와, 퀘벡)	오전	○ 기관방문 지침용 최종 검토자료 작성 ○ 현장 질의사항 확정 및 분야별 질의자 선정	
		오후	○ '퀘벡'으로 이동(420km, 6시간 소요)	
9. 11.(월)	캐나다(퀘벡)	오전	○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방문 및 면담 ○ 주요 브리핑 내용 및 질의응답 요약 정리	
		오후	○ 선거운동 현장(장탈롱주 보궐선거) 자료수집 ○ 유권자 대상 투표참여 인식 등 의견 청취	
9. 12.(화)	캐나다(오타와, 토론토)	오전	○ 캐나다 선거관리청 방문 및 면담 ○ 주요 브리핑 내용 및 질의응답 요약 정리	
		오후	○ '토론토'로 이동(400km, 6시간 소요)	
9. 13.(수)	캐나다(토론토)		○ 공항으로 이동·출발	
9. 14.(목)	캐나다(토론토) →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II 캐나다 투표관리 제도 등 사전 연구

1 사전연구기간 : 2023. 5. 12.(금) ~ 9. 6.(수)

### 2 방 법

- 캐나다 연방선거법 자료 검토
-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캐나다 선거관리청 및 토론토 선거국과 방문 일정 등 협의
- 캐나다 선거관련 온라인 사이트 및 2022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 책자를 통한 자료 검색·수집
- 방문기관 및 유권자 투표참여 인식 관련 사전질의서 작성
- 팀원간의 소통 및 유대강화 등

### ③ 사전 조사 · 작성 자료 등

- 캐나다 연방선거청 홈페이지 자료
-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캐나다 선거관리청, 토론토 선거국 사전질의 답변서
- 캐나다 연방선거법 및 2022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 책자

## III 세부 연수내용

### ① 퀘벡주 선거관리기관(Elections Quebec)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가. 일 자 : 2023. 9. 11.(월)
- 나. 장 소 :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회의실
- 다. 참석인원 : 13명[퀘벡주 선거관리기관 5명, 연수팀 7명, 통역사(불어) 1명]
- 라. 주요내용 : 퀘벡주 선거 · 투표제도 브리핑 및 관련 내용 질의응답

#### <퀘벡주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주요 브리핑>

- ☞ Elections Quebec은 캐나다 퀘벡주 선거관리를 담당하며 지방선거관리에서 퀘벡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 Elections Quebec은 캐나다 연방선거를 담당하는 Elections Canada와는 다른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두 기관 사이에는 계층적 관계가 없음.
- ☞ 퀘벡주 내 선거는 단일 라운드 다수결 투표 시스템을 갖춘 입법 선거로 125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5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더라도 당선됨.
- ☞ 가장 많은 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정당의 지도자가 퀘벡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총리 선출을 위한 보통선거에 의한 직접투표는 없음.
- ☞ 퀘벡에는 약 630만명의 유권자가 있고 한 선거구에는 약 50,000명의 유권자가 있음. 이는 각 425명의 유권자가 있는 투표소(투표함)에 해당하는 투표구 섹션으로 세분화됨.

- ☞ Elections Quebec은 125개 선거구의 선거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약 330명의 정규직원이 있음. 현장에서의 선거는 선거구의 선거관리를 추진하는 ①**담당관**이 조정함. 선거기간(선거일 전 33~39일)동안 125명의 ②**선거관리임원**은 약 15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선거구 내 선거관리를 지원함.
- ☞ 투표소에서 원활한 선거 진행을 보장하는 **선거관리인(③관리관, ④서기)**은 ⑤**심사팀**이 현지에서 모집하고 훈련함. 선거일에 일하는 사람은 선거구당 약 400~500명 정도가 됨.

**《 캐나다 선거관리인력 소개(역할 등) 》**

- ① **담당관** : 전반적인 선거구 선거관리 업무 담당[구시·군위원회 선거계장과 유사]
- ② **선거관리임원** : 팀을 구성하여 선거구 선거관리 지원[시·도위원회 직원 역할과 유사]
- ③ **관리관** : 각 투표소를 관리하는 책임자[투표관리관 역할]
- ④ **서기** : 투표소 관리관 보조자[직무대행자(투표사무원) 역할]
- ⑤ **심사팀** : 관리관 및 서기를 모집하여 교육·훈련하는 인력[구시·군위원회 전임 직원과 유사]

**<퀘벡주 선거관리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 Q. 퀘벡주 선거관리에 있어 투표소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유권자는 종이 형식의 단일 투표용지(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모두 포함)에 기표함.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음.
- Q. 선거관리를 위한 투표소 관리인력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나요?  
A. 투표소에는 하나 이상의 하위 투표소가 있을 수 있으며 투표소에는 장소책임자[정보질서유지관리관(PRIMO)]로 불리는 관리관(투표용지 교부 담당)과 서기(선거인 신원 확인 및 선거인명부 표시 담당)가 투입됨.
- Q. 1개 투표소에서 최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자수의 제한이 있나요?  
A. 각 투표소 선거인 명부 최대 등재 선거인수는 425명으로 투표자수는 등재 선거인수 상한선인 425명을 넘을 수 없음.

Q. 2개 이상의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각각 교부하나요? 아니면 1매의 투표용지에 2개 이상의 선거를 기표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A. 퀘벡 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선거가 실시되는데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시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동시선거가 대표적인 케이스임. 투표방법은 각 선거별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하는 방식이며 투표함은 선거별로 두지 않고 각 투표소에 1개만 비치함.

Q.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하는 등 선거인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투표용지가 손상되었거나 잘못 기표된 경우, 유권자는 새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음. 유권자는 기존에 수령 받은 오·훼손 투표용지 모든 기표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별도 제공하는 봉투에 해당 투표용지를 넣어야함. 아울러, 관리관은 새 투표용지를 교부한 후 투표용지 교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당일 투표록에 기록함.

Q. 투표소는 어느 건물에 설치하며 투표소 확보에 어려움은 없나요?

A. 대다수의 투표소는 주로 학교나 공공건물에 설치함. 퀘벡주는 선거일이 월요일인데 학교 같은 경우 월요일에 주로 휴강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 투표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음.

Q. 학교 또는 공공건물, 정부가 소유하는 건물 외에 설치된 투표소가 있나요?

A. 투표소 설치 기준(접근성, 편의성 등)을 충족하는 공공장소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담당관은 지역 내 호텔 객실 등을 투표소로 확보(임대)함.

Q. 학교 등을 투표소로 사용할 경우 소유주 또는 건물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나요?

A. 학교나 공공건물 투표소는 표준화된 보상(기본사용료)이 지급되는 반면, 개인 건물은 시장 가격으로 임차함.

Q. 선거인이 ‘엄숙한 선서’ 를 함으로써 신분증이 없는 같은 투표소의 다른 선거인을 보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퀘벡주에서 투표하려면 선거일 이전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으나 선거일날 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져 오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다른 선거인이 해당 유권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선서를 하면 투표할 수 있음. 이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임.

Q. 동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유권자 등으로부터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A. ‘엄숙한 선서’ 를 통한 선거인 보증 투표로 문제가 발생된 적은 거의 없음.

Q. 투표하려는 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명으로 투표한 후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제549조의1 제1항에 따라 엄숙히 선언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에 타인 성명 기재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유권자가 왔을 경우 해당 유권자의 참정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임.

Q. 실제로 다른 사람이 먼저 투표를 했으나 선거공무원의 신분확인 오류가 아닌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투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A. 만약 어떤 사람이 투표를 했다면 명부에 기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며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에 기록이 남게 됨. 다만, 사무원의 실수인지, 동일인의 재투표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Q. 사전투표 기간 중, 그리고 사전투표 종료 후 선거일 개표 전까지 사전투표함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 보관·관리되나요?

A. 사전투표는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진행되며, 투표함은 담당관의 지역 사무소에 있는 보안실에 보관됨. 보안실에는 별도의 CCTV는 운영하지 않고 시건장치만 설치됨.

※ 사전투표함의 경우 선거일의 오후 6시(선거일 투표 종료 전임)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시작하며, 사전투표함 개표장소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출입이 통제됨.



Q. 우편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는 특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발송한 우편 투표의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퀘벡주에서는 퀘벡 이외 지역의 유권자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데 모든 우편 투표는 퀘벡주에 위치한 퀘벡 선거중앙사무소로 전달되며 직원이 직접 수기 접수함.

※ 참고로, 2022년에 실시된 퀘벡주 각종 선거에 있어서는 특별조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된 특정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었음.

Q. 접수된 우편투표는 개표 전까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보관·관리되나요?

A. 접수된 우편 투표는 선거중앙사무소에서 선거자료창고로 보내져 선거일에 개표소에서 개함·집계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됨.

Q. 투표소 개표 시 투표의 유효·무효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요?

A. 선거일 투표마감 후 각 투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며 투표의 유효·무효 판단은 관리관(투표 용지 담당)과 서기(선거인 신원 확인 및 선거인 명부 표시 담당)가 담당함.

Q. 투표소 개표를 위해서 투표지의 유효·무효 결정 등 개표관련 교육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A. 관리관과 비서는 선거일 전에 지역 담당관 사무실에서 심사팀원에 의해 개표관리 집합교육(투표계산 방법 등)을 받음.

#### 마. 관련사진



## ②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가. 일 자 : 2023. 9. 12.(화)

나. 장 소 : 캐나다 선거관리청 회의실

다. 참석인원 : 10명[캐나다 선거관리청 2명, 연수팀 7명, 통역사(영어) 1명]

라. 주요내용 : 캐나다 선거 · 투표제도 브리핑 및 관련 내용 질의응답

### 〈캐나다 선거관리청에 대한 주요 브리핑〉

- ☞ 캐나다 선거관리청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의무와 책임, 현재 캐나다 선거 시스템, 선거관리의 현대화 법안 발의내용 설명
- ☞ 최근 2021년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소개
- ☞ 캐나다 선거관리기구는 세 개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음. 최상위에 연방 선거청이 있고, 10개의 주마다 선거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방에도 선거기관이 구성됨.
- ☞ 캐나다 선거관리청과 각 주에 설치된 선거관리기관은 별개의 기관이며,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 ☞ 캐나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 등 규정 안내

### 〈투표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

- Q. 학교 또는 공공건물, 정부가 소유하는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적정 투표소 확보에 어려움은 없나요?
- A. 연방 수준의 캐나다 선거 시스템에 따라 연방담당관(위 퀘벡주 ‘담당관’ 역할과 유사)은 자신이 임명된 선거구 내에서 연방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투표소를 확보하는 일도 담당하는데 투표소는 대부분 학교, 공공건물인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주거용 건물 로비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함. 투표소 확보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시된 2021년 각종 선거에서는 기존 투표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전에 연방담당관에게 공간을 임대하겠다고 말한 일부 부동산 소유자 등마저 결정을 번복하기도 하였음. 이로 인해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확보해야하는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경찰청 협조로 상업용 건물, 스포츠 센터 등 비전통적인 장소가 투표소로 사용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음.

Q. 학교 또는 공공건물, 정부가 소유하는 건물 외에 설치된 투표소의 사용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연방담당관은 투표소 임차를 확보하기 위해 점유주와 협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협이는 캐나다 선거관리청 본부로부터 지원 받은 모든 임대사항이 명시된 표준화된 임대 계약서류(사용료 포함)에 의하여 진행됨.

Q. 선거인이 '엄숙한 선서' 를 함으로써 신분증이 없는 같은 투표소의 다른 선거인을 보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이 없는 선거인은 다른 유권자의 보증을 받고 엄숙한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과 거주지를 증명 받을 수 있음. 이때 보증을 해준 다른 유권자는 신분증이 없는 선거인과 동일한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유권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함. 투표소에서 선거인 보증에 의한 투표를 허용하는 이유는 실수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선거인이라도 투표소에 입장한 이상 최대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 주려는 취지임.

Q. 유권자가 선거인 보증 투표방법을 악용한 사례는 없었나요?

A. 캐나다 선거관리청은 투표 관련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 기록을 검토하는 등 선거가 끝난 후에도 확인·점검업무를 추가로 실시함. 모든 선거 자료는 10년 동안 보관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봉인된 투표지 보관봉투를 열어 문제의 투표용지를 재검사할 수 있음. 연방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Q. 선거인 보증 투표를 시행하면서 다른 유권자 등으로 부터 이의제기 또는 문제점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A. 선거인 보증 투표는 수십 년 동안 시행된 투표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농촌 유권자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이 1993년부터는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확대됨. 캐나다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대한 대중의 큰 반대는 없었음. 선거인 보증 투표 제도 시행 중 간혹 불법 투표 사례가 발생하긴 했지만 거의 고의성 없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음. 2015년 이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투표 사례는 10건 미만임.

Q. 선거인명부에 다른 사람이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한 이후, 실제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온 경우 서면으로 제549조의1 제1항에 따라 엄숙히 선언을 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해당 조항(제549조의1 제1항)을 만든 목적은 신원 확인에 오류가 있거나 누군가가 투표를 위해 부당하게 유권자를 사칭한 경우에도 실제 해당 선거인이 불이익 받지 않고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임. 다만, 해당 선거인은 엄숙한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법의 처벌에 따라 아직 투표하지 않았음을 맹세하여야 하며 사전에 자신의 신원과 투표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됨.

Q. 같은 사람이 투표소에서 2회 이상 의도적으로 투표했을 경우 이를 확인·증명할 수 있는 실무적 장치가 있나요?

A. 각 투표소에는 등록된 선거인 명부가 있으며, 투표하러 온 유권자의 이름이 명부에 기록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우편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상황도 해당 명부에 기록됨. 선거인 명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 유관기관간 상호 공유되며 해당 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유권자가 발견될 경우 선거관리기관 사무실로 출석하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됨.

Q.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 받은 후 선거인의 귀책사유로 용지를 오·훼손한 경우 또는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 교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오·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한 이유로 투표용지 교환을 요청할 경우 해당 유권자는 오·훼손 투표용지의 모든 기표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별도 제공하는 봉투에 해당 투표용지를 넣은 후 관리관에게 제출함. 이후 관리관은 해당 유권자에게 새로운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모든 상황을 당일 투표록에 기록함.

마. 관련사진



③ 토론토 시청 선거국(Toronto Elections)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가. 일 자 : 2023. 9. 8.(금)

나. 장 소 : 캐나다 토론토 시청 선거국 사무실

다. 참석인원 : 10명[토론토시 관계자 2명, 연수팀 7명, 통역사(영어) 1명]

라. 주요내용 : 토론토시장 보궐선거 브리핑 및 관련 내용 질의응답

〈토론토시에 대한 주요 브리핑〉

☞ 토론토시는 신규이민자가 유입되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 이민자 정착과 통합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겪어왔으나, 정책·프로그램·서비스 등의 설계 및 제공 시 다양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인구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성을 단점이 아닌 강점으로 여기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추진 결과 캐나다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음.

☞ 토론토시의 공공서비스는 ‘City Manager(시장 임명)’가 주도하여 시의회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론토 공공서비스를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윤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론토 공공서비스 조례(Tronto Public Service By-law)’를 채택하고 있음.

☞ 토론토시 의회는 시 전역에서 선출되는 시장과 구에서 각각 선출되는 25명의 의원(총 26명)으로 구성되며, 시장과 시의원은 각각 의회에서 한 표를 행사함. 시장은 의회의 위원회 및 그 임무를 결정하거나 각 상임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함.

※ 의원 임기 : 2022년 ~ 2026년(현 임기 시작 : 2022년 11월 15일)

☞ 의회의 업무를 보다 세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5개), 지역사회협의회(4개)를 운영하고 각 위원회는 의원 5~8명으로 구성됨. 또한 시장은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며 상임위원회 중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음.

※ 토론토 시의회 상임위원회 : 집행위원회,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일반 정부 및 허가위원회, 인프라 및 환경위원회, 기획주택위원회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이며 의회는 이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는 달리 토론토의 경우 시장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의회는 시민의 일상적인 사안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 등을 함으로써 토론토 전체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이끌고 있다고 보임.

### <지방선거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Q. 6월 26일에 실시한 토론토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101명과 1마리의 개가 화제가 되었는데, 토론토시의 입후보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로 토론토에 거주하거나 토론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입후보 자격이 있음.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는 토론토 시민 25명의 추천서와 200달러 접수비를 지불해야하며, 실제로 뉴스에 화제가 된 구조견 몰리의 경우 보호자의 이름으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짐.

Q. 토론토에 거주하지 않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입후보할 수 있는데, 토론토의 부동산을 소유한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가능함. 또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토론토시에 부동산을 소유·임대하고 있으면 이번 토론토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음.

Q.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함.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개설한 계좌로 최대 2,500달러까지 후원할 수 있음. 다만, 회사·노동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음.

Q. 보궐선거를 관리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A. 보궐선거는 선거일 공고부터 개표까지 단시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됨. 이번 보궐선거를 진행하면서 토론토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Myvote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함. 유권자는 Myvote 앱을 통하여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내 투표소 찾기, 우편투표 신청 등이 가능함.

Q.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A. 누구나 우편투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투표를 신청 후 우편투표 패키지를 선거국에 발송하지 않은 유권자는 현장투표도 가능함.

Q. 우편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없나요?

A. Myvote를 통해서 우편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인의 이메일로 확인코드가 발송됨. 선거인은 확인코드를 조회하면 우편투표 신청이 승인된 시간, 우편투표 패키지를 발송한 시간, 선거국에서 우편투표 패키지를 수령한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은 없는 편임.

Q. 선거인에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외에 인정되는 투표방법이 있나요?

A.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우편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 대리인을 지정하여 투표하는 대리투표 방법이 있음. 선거인은 토론토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친척(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조부모·손자) 중 1명을 투표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표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서기의 인증을 받아야만 대리투표가 가능함.

Q. 유권자정보카드(VIC)는 무엇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유권자정보카드는 선거인의 본인 확인 시간을 단축해주는 기기이므로, 유권자정보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가능함. 유권자정보카드는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VIC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Myvote 앱에서 발급이 가능함.

Q. 투표하러온 이동약자 선거인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A. 물리적으로 투표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 선거인은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물 밖, 차량, 투표소 내 다른 장소로 가져오도록 요청할 수 있음(Curbside Voting). 또한, 우리는 이동약자 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유권자 등이 불편함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Q.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선거인을 위한 제도가 더 있나요?

A. 유권자 지원 단말기(VAT)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 유권자가 보조인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있음. VAT는 터치스크린, 점자 키패드, 오디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④ 캐나다 연방의회 의사당 방문 및 정치제도 연구

가. 일 자 : 2023. 9. 9.(토)

나. 장 소 : 캐나다 연방의회 의사당

다. 주요내용 : 캐나다 의회제도(상원·하원) 및 의원내각제 정치제도 연구



## 〈연방의회에 대한 정치제도 연구〉

☞ 캐나다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Commons) 2개의 의회로 구성된 양원제로, 하원은 투표에 의한 선출직이며 상원은 수상이 지명함. 법안은 총독 등이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두 의회에서 검토 및 채택되어야 함.

☞ 하 원(House of Commons)

▶ 의석수 : 338석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온타리오주	121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42명
퀘벡주	78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4명
노바스코샤주	11명	서스캐처원주	14명
뉴브런즈윅주	10명	앨버타주	34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7명	유콘준주	1명
매니토바주	14명	노스웨스트준주	1명
		누나부트준주	1명

▶ 선출 :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별 직접 보통선거(18세 이상 투표권 보유)

▶ 임기 : 4년

※ 단, 통상 집권당이 자당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의회 해산 후 총선을 실시하거나, 소수당 정부 집권시 야당들의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어 총선이 실시되는 등 실제로 임기 4년을 완료한 경우는 드문편임.

▶ 권한 : 헌법에 입법권 규정,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문제와 관련된 법률제정, 국정사안 논의, 정부 조치에 대한 설명 요청

☞ 상 원(Senate)

▶ 의석수 : 105석

주 명	의석수
온타리오주	24명
퀘벡주	24명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각 10명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뉴펀들랜드주, 매니토바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각 6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4명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 준주	각 1명

- ▶ 선출 : 총리 추천에 의해 총독이 임명
- ▶ 임기 : 정년 75세(단, 1965.6.2. 이전 임명자는 종신제)
- ▶ 권한 :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검토·수정·거부 또는 통과 및 공공 지출·세금부과와 관련된 법안을 제외한 여타 법안 발의
- ▶ 소집 : 총독이 국왕의 이름으로 소집

☞ 상·하원간의 관계

- ▶ 관례상 정부 제출 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되며, 상원에서는 재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없음.
- ▶ 형식상 상·하원은 권한이 대등하나 하원의원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재정관계 법률안의 우선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각이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하원이 사실상 권력 우위에 있음.
- ▶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하거나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수정의 경우에도 주로 문안을 명확하게 다듬는 수준임.

☞ 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되고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통치함. 즉 의회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 총리가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총리를 사임시켜 정권교체가 가능하지만 의회 내에서 이합집산이 잦게 되면 정부의 존속 기간이 짧아져서 선거를 자주 실시하게 되어 그에 대한 막대한 소요 비용이 들게 되고 정국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제 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했으나 1년여만에 폐지되고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비춰볼 때 정치인의 소신있는 국정 운영, 정치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느꼈음.

## 5 퀘벡 장탈롱주 선거운동 참관 및 유권자 투표참여 인식 등 의견 청취

가. 일 자 : 2023. 9. 11.(월)

나. 장 소 : 퀘벡 및 오타와 일대

다. 주요내용 : 퀘벡 장탈롱주 선거운동 참관 및 유권자 투표참여 의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

### <퀘벡 장탈롱(Jean-Talon)주 선거운동 현장 참관>

- ☞ 퀘벡 장탈롱주 보궐선거가 2023년 10월 중 예정되어 있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현수막(election sign)을 도심 속에서 접하게 되어 캐나다의 선거운동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할 수 있었음.
- ☞ 퀘벡의 선거법상 선거기간 전 선거운동 현수막(election sign) 게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게시장소 등 제한이 있으며, 특히 투표일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부지, 해당 건물 입구에서 선거인이 볼 수 있는 지점,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의 안뜰(quadrangle)과 같이 건물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제한됨.
  - ※ 선거운동 현수막(election sign) 게시 제한장소 : 기념물, 조각품, 문화유산 건물 또는 유적지, 나무, 소화전, 교량, 육교, 전기철탑, 광고를 위해 지정된 공간을 제외한 버스정류장 또는 공공벤치, 도로에 대한 통행권
- ☞ 선거운동 현수막(election sign)은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물의 소유주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 후 철거되지 않은 election sign을 철거할 수 있고, 정당 등은 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함.
- ☞ 선거운동 현수막(election sign)의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는 없으나, 인쇄자의 이름과 공식 대리인(official agent)의 이름 및 직위는 필수로 기재되어야 함.
- ☞ 그 밖에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도로 표지판의 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한 게시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였음.
- ☞ 재질·규격·수량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선거운동 현수막은 우리나라의 선거벽보 정도의 크기로 제작·부착되어 우리나라처럼 도심 속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우려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부분이 다소 인상적이었음.

☞ 선거운동 현수막(election sign) 주요 사진



☞ Jean-Talon 보궐선거 개요

- ▶ 선거일 : 2023. 10. 2.
- ▶ 선거일 투표시간 : 09:30 ~ 20:00
- ▶ 등록 선거인수 : 46,941명(인구수 대비 67.2%) ※ 인구수 : 69,816명
- ▶ 선거구 : Sainte-Foy-Sillery-Cap-Rouge 자치구에 위치한 Ville de Quebec의 일부
- ▶ 투표소수 : 169개소
- ▶ 후보자수 : 10명

후보자명	소속정당	후보자명	소속정당
Elise Avard Bernier	Parti liberal du Quebec /Quebec Liberal Party	Marie-Anik Shoiry	Coalition avenir Quebec-L'equipe Francois Legault
Jean Duval	Independant(e)	Martine Ouellet	Climat Quebec
Jesse Robitaille	Parti conservateur du Quebec -Equipe Eric Duhaime	Olivier Bolduc	Quebec solidaire
Kadidia Mahamane Bamba	Parti vert du Quebec/ Green Party of Quebec	Pascal Paradis	Parti quebecois
Lucie Perreault	Democratie directe	Steve Therion	Equipe autonomiste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 투표일에 고용주가 급여 삭감이나 기타 벌금 없이 연속한 4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단, 사전에 고용주에게 요청하여야 함).

※ '캐나다 연방 선거법'상 3시간의 투표시간 보장과 상이함.

〈유권자 투표참여 의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

Q.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간 부정적 의혹제기 및 또는 네거티브, 선거법 위반 관련 보도가 많은데 캐나다는 어떤가요?

A. 캐나다는 후보자간에 부정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도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선거법 위반 관련 보도도 거의 없습니다.

Q.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적’ 으로 생각하는 편인가요?

A. 캐나다에서는 투표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Q.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참여 홍보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SNS와 광고를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SNS와 광고 모두 유권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Q. 캐나다에서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후보자가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지요?

A. 후보자 입장에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Q. 길거리나 공원 등에 선거운동용 표지판에 대한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선거운동용 표지판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운동용 표지판 철거는 잘 이루어지나요?

A. 선거 종료 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용 표지판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Q.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후보자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투표하나요?

- A. 아무래도 내가 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보고 투표합니다.
- Q. 후보자 개인별 장점이 많은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 중, 대다수의 유권자는 어느 후보자를 선택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정당보다는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를 통해서 실제 공약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 Q. 한국의 선거기간에는 후보자간 네거티브, 후보자간 선거운동 경쟁으로 소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선거분위기는 어떤가요?
- A. 캐나다는 후보자간에 네거티브나 선거운동으로 인한 경쟁은 특별히 보이지 않아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 IV 선거제도 비교 및 시사점

### ① 주요 투표제도의 비교

항 목	대한민국	캐나다	비 고
신분증 미지참시	투표 불가	엄숙한 선언 후 다른 선거인을 통한 신원보증	
투표관리 인력	선거인수에 따라 다름	2명	
투표소 운영시간	06:00 ~ 18:00	09:30 ~ 20:00 (오타와 기준)	
투표용지 작성	기호, 정당, 후보자	후보자 사진, 정당, 후보자	
투표용지 재교부 (선거인 귀책사유)	허용하지 않음	1회에 한함	
사전투표 보관·관리	CCTV 및 시건장치 설치	시건장치만 설치	

### ② 우리나라와 다른 캐나다의 주요 투표제도

- 필수 신분증이 없는 선거인이 엄숙한 선언을 하고 다른 유권자로부터의 보증을 받아 투표하는 제도
- 선거인이 투표용지 잘못 기표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투표용지를 재교부하는 제도
- 사전투표함 보관·관리제도(CCTV 미설치)

### ③ 캐나다 투표제도에서의 시사점

#### 〔신원보증을 통한 투표권 보장제도〕

##### 「캐나다 연방선거법」 제143조(엄숙한 선서)

(3) 선거인이 같은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다른 선거인을 동반한 경우 해당 선거인은 제549조의1제1항에 언급된 엄숙한 선언을 서면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를 대신 증명할 수 있다.

(a) 제1항에서 언급된 공무원에게 제2항제a호 또는 제b호에서 언급한 신분 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들을 제시하고

(b) 서면으로 제549의1제2항에 언급된 엄숙한 선언을 함으로서 당해 선거인을 보증함.

- 캐나다는 종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표준양식의 유권자 발급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투표를 할 수 있었음에 따라 표준양식의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 선거구의 다른 사람들이 신원보증을 해주면 투표할 수 있었으나, 다른 선거인에 의한 신원보증 제도가 폐지되고 사진과 주소가 명기된 신분증으로만 신원확인을 하도록 선거법이 개정(2014년)됨에 따라 투표구 거주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학생, 원주민, 고령자 등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등 투표참여가 위축될 수 있었음. 이후 투표권 확대와 선거관리 강화 측면에서 실시한 선거법 현대화 과정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제도임.
- 우리나라 역시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 선거때마다 신분증 미지참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신분증 제시 외에 신원보증을 통해 투표참여를 할 수 있다면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음.

## **(훼손된 투표용지 처리 등(투표용지 교환 포함))**

제152조(1) (훼손된 투표용지) 투표용지가 훼손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은 이를 제143조제항에 따른 선거공무원에게 동 투표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부선거관리관은 그 투표용지에 “훼손된 투표용지”라고 표시하여 준비된 봉투에 넣고 선거인에게 다른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의 교환 제한) 선거인은 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인 1표 원칙으로 선거인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되는 경우 교체해 줄 수 없음이 원칙이나, 명문상 1회에 한하여 투표용지를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이 또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한 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원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투표용지를 재교부할 수 없음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으나 캐나다는 1회에 한하여 투표용지 재교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웠음.

##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함 보관)**

제175조(5) (투표함 보관) 선거공무원은 투표함이 투표일에 개봉될 때까지, 선거관리장의 지시에 따라 봉인된 투표함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275조(1) (투표용지 보관) 선거관리관은 그의 사무실에서 접수한 투표용지를 제273조에서 언급된 선거공무원에게 인계할 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겉봉투 보관) 규정된 기한 이후에 수령한 모든 겉봉투는 별도로 문리하여 봉인하여 보관하고, 선거관리관이 서명하고 수령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한다.

\* 겉봉투 : 선거구 이름이 적힌 봉투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서 CCTV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사전투표 담당관의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안실에 보관되며 별도의 CCTV없이 시건장치만 설치하였음.
- 우편투표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각 주 선거 중앙사무소에서 보관함.



- 캐나다 연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반적인 정치·정당·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는 반복되어 왔다고 보여진 바, 이번에는 캐나다 선거제도에 대해 조금 더 실무적이고 현장중심적으로 접근하고자 캐나다 연방선거법과 연계한 ‘투표관리 제도’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연구 및 현장 질의응답을 전개하였음.
- 본문 연구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투표관리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① 신분증 미지참 선거인의 신원보증(다른 선거인)에 의한 투표가 가능한 점, ② 선거인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오·훼손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투표용지 재교부가 가능한 점, ③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별도 CCTV 설비 없이 단순 시건장치만 설치하는 점이었음. 이 외에 투표소 운영시간이 09:30~20:00인 점, 선거일에 각 투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음.
- 캐나다 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 방법은 우리나라와의 제도·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른 측면이 분명 존재하였고 이를 우리나라에 바로 접목하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짐. 다만, 캐나다의 신원보증을 통한 투표참여 제도 및 투표(용)지 재교부 제도 등은 선거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제도로 실제 투표소에서 업무를 과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투표소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와 안정적인 투표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별 지 1-1. (사전연구자료) 캐나다의 정치제도 1부.  
1-2. (사전연구자료) 캐나다의 선거제도 1부.  
1-3. (사전연구자료) 캐나다의 선거관리기관 1부.  
2. 수집자료 목록 1부.

# 캐나다의 정치제도

## 1. 캐나다 정치제도의 주요 특징

캐나다의 정치제도는 입헌군주제로, 영국 국왕 찰스 3세(King Charles III)가 국가원수이고, 총독이 그를 대행한다. 캐나다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고, 행정부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며, 사법부는 최고법원을 포함한 연방 및 주 법원으로 구성된다.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로서,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각각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가. 입헌군주제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의 헌법에 따라 통치되는 입헌군주제이다. 이는 국가원수가 헌법에 의해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이며, 실질적인 통치권은 의회와 내각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지만, 캐나다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총독이 대신하여 캐나다에서 의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총독은 캐나다 정부의 제안에 따라 영국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고, 임기는 5년이다.

### 나. 양원제 의회

캐나다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이다. 상원은 105명의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와 준주별로 일정한 비율로 배정되어 있다. 상원의원은 총독(총리의 제안에 따라)이 임명하며, 임기는 75세까지이다. 상원은 입법과 감사,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하원은 338명의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거구별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하원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치르며, 재선에 제한이 없고, 입법과 예산안 심의, 정부에 대한 신뢰표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고, 당수가 총리가 된다.

상원은 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행정과 재정을 감독하고, 소수자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하원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고, 정부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요구하고, 국가의 주요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 다. 의원내각제

캐나다의 행정부는 의회와 내각으로 구성되는 의원내각제이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입법부에서 선출된 인사들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정부를 이끄는 의미를 의미한다. 캐나다의 내각은 총리와 각 부처별 장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하원 또는 상원의 의원들 중에서 선출된다. 내각은 정부의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고,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업무를 책임진다. 내각은 의회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신뢰표결에 부결되면 사임하거나 총선을 요구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는 캐나다의 행정과 입법의 조화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내각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당이나 연립당이 구성하므로,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입법과정이 원활해진다.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정부의 행위에 대해 투명성과 적절성이 요구되고,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다. 내각은 의회에서 선출된 인사들로 구성되므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 지역과 성별 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다. 연방제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로서,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각각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와 준주는 자신들의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 외교, 통화 등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교육, 보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

※ 주 : 온타리오주, 퀘벡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매니토바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사스캐처원주, 앨버타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주

※ 준주 :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준주, 누나부트 준주

연방제는 캐나다의 지역적 다양성과 자치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각 주와 준주는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에 맞게 자신들의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와 협력하거나 대립하거나 할 수 있다. 연방제는 캐나다의 통합과 분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 2. 캐나다의 정치

### 가. 개관

- 국 체 : 입헌군주제, 연방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나. 국가원수(Sovereign) : 찰스 3세 국왕

- 권한 : 캐나다의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나, 이는 상징적 의미이며, 국왕의 권한은 총독이 대리행사

### 다. 총독(Governor General)

- 현 총독 : 매리 사이먼(2021.7.6. ~ ) 제30대 총독
- 임명 : 내각(총리)의 요청에 의해 영국 국왕이 임명(사실상 임명권자는 총리)
- 임기 : 통상 5년
- 권한 : 각료 및 상원 의원 임명권, 법률안 승인, 의회 소집 및 해산, 군통수권, 국가원수 대행 등 주요 권한이 주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행사 가능한 상징적 성격

### 라. 총리(Prime Minister)

- 현 총리 : 저스틴 트뤼도(2015.11.4 취임, 현재 3기 집권 중)
- 임명 : 총선에서 승리하는 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로 임명
- 임기 : 사임하거나 또는 하원 다수당이 선거에서 패배시까지

- 권 한 : 총독 임명 추천, 각료의 임명 추천, 의회 소집 및 해산 요구, 전쟁 선포, 조약체결 및 비준 등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하의 권한 행사

## 마. 내각

- 구 성 :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
- 역 할 :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연방정부 부처의 운영 및 감독, 주요 법안 준비 및 의회 통과
- 각료 임명
  - 각료는 총리가 인선하며, 언어, 지역, 종교, 다양성, 성별 등의 안배 고려
  - 각 주에서 최소한 1명 이상 입각하는 것이 상례
  - 일반적으로 하원의원(또는 드물게 상원의원) 중에서 임명, 의원이 아닌 각료는 조기에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례
- 임 기
  -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총리 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체
  - 의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또는 의회가 해산되어 임기 종료(단, 차기 총선시까지 과도기 내각 참여)
    - ※ 차기 총선 시까지 추밀원 사무국장 및 각 부처 차관 등 정부 관료로 구성된 과도기 내각(caretaker cabinet)으로 운영

## 바. 의회

- 구 성
  - 영국 국왕(총독이 대리),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되며, 모든 입헌사항은 3자간의 동의와 승인 필요
  - 국왕을 대신하는 총독에게 의회 소집, 휴회, 해산 및 법률안에 대한 재가권이 있으나,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며 총리가 국정을 총괄

※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총독의 승인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  
되지만, 총독은 정부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 ○ 법안의 입법화 과정

- 입법화를 필요한 정책 제안(내각 제출)
- 내각위원회 검토→관계장관 입법 초안 요구서 법무부 제출→법무부  
법안 초안 작성→내각 위원회 법안 초안 검토 및 결정→총리 서명
- 하원 법안 1독회(법안 제목만 낭독후 법안 인쇄 명령)→동일원내 2독  
회(법안 원칙 토론 후 상임위 회부)→해당 상임위 법안 검토→3독회  
(토의 및 최종동의)→상원에 회부(동일 과정 반복)→국왕의 재가(양원  
모두 통과 시)

## 사. 사법부

### ○ 개 관

- 캐나다의 법체계는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과  
그 외 각종 관습법, 판례로 구성
- 대부분의 캐나다법은 영국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따랐으나,  
퀘벡주만은 프랑스의 대륙법 체계를 도입, 토착화
-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어 있으며 법관은 정년제(75세)
- 대법원은 연방의회 법에, 지방(주)대법원 이하는 지방의회법에 의거  
설립. 주·지방의 최고심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상고 가능

### ○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 지방법원 및 연방법원의 상고심으로 최고심
- 1875년 최초로 설립, 1명의 대법원장(Chief Justice of Canada)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최소 3명은 퀘벡 출신)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총독이 임명
- 특별한 절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문에도 응하며, 상·하원의 법안  
심의 시 자문 요청에도 응함.

○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Canada)

- 연방법원은 제1심부(Trial Division)와 항소부(Appeal Division)로 구성
- 연방법원의 관할권은 주 간(interprovincial) 분쟁 및 연방정부와 주간(federal-provincial) 분쟁, 지적재산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포함
- 특정 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행정법원, 조세법원, 군사법원 등을 별도로 설치

○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 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므로, 주마다 그 명칭·운영이 다르나 조직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3심제를 채택
- 주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 주상급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s), 주항소법원(Provincial Courts of Appeal)으로 구성

아. 정당

○ 특 징

- 정당은 캐나다 정치의 핵심으로, 영국식 의회제도를 따라 선거 결과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하원내 과반수 확보 여부는 정국의 안정·불안정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 제2당은 공식 야당 지위를 가지며, 공식 야당 지도자는 총리와 같은 액수의 봉급과 관저 제공
- 공식 야당은 정권을 잡는 경우를 예상, 각료 후보로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조직, 정책 등을 협의 및 결정
- 12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연구 활동을 위한 정당보조금 지원



○ 주요 정당

구 분	정당명	당 수
여 당	자유당 (Liberal Party)	저스틴 트뤼도 (Justin Trudeau)
제1야당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캔디스 버겐 (Candice Bergen)(임시)
제2야당	퀘벡 블록당 (Bloc Québécois)	이브 프랑수아 블랑췌 (Yves-Francois Blanchet)
제3야당	신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자그미트 싱 (Jagmeet Singh)
제4야당	녹색당 (Green Party)	애나멜 폴 (Annamie Paul)

○ 정당별 정치성향

- 자유당

- 현 집권당으로 2021.9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3기 집권 중(과반의석 확보는 실패)
- 1867년 연방 창설 이후, 총 44대 정부 중 26차례 집권한 캐나다 대표 정당
- 전통적으로 동부 특히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도시계층 및 대서양 동부주에 기반
- 중산층 감세, 부유층 증세, 사회복지 확대, 적자재정 운영을 통한 경제부양 실시
- 다문화 및 다양성 중시, 성소수자·원주민 권리 보호, 마리화나 합법화, 양성평등, 여성의 낙태 권리 인정 등을 사회적 진보주의 성향
- 전통적 다자주의 외교 중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관대한 난민·이민 수용 정책 등

- 보수당

- 2006년 이래 9년간 집권하였으나, 2015.10월 총선에서 패배 후 제1야당으로 지위 유지 중
- 역사가 오래된 정당으로 자유당과 함께 캐나다 양대 정당 중의 하나

- 자유무역과 기업인 이익을 대변, 기업세 감세, 사회적 보수주의 성향, 재정 보수주의, 균형재정 중시, 국가 이익 및 안보 중시 등
- 퀘벡 블록당
  - 1990.6월 미치호협정 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당시 연방각료이던 루시엔 부샤르(Lucien Bouchard) 전 당수가 집권 진보보수당을 탈퇴, 퀘벡 이익 옹호를 위한 별도의 원내그룹을 결성한 것이 모체
  - 퀘벡 블록의 주요 정강이자 존재 이유는 퀘벡 분리 독립 지원이며,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성향
  - 1993년 총선에서 퀘벡주민의 지지를 얻어 제1야당으로 부상한 바 있으나, 퀘벡 분리주의 약화로 1997년 총선 이래 제3야당의 지위로 하락, 지역적 군소 정당 수준
- 신민주당
  - 2011.5.2 총선에서 창당 후 최초로 제1야당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2019.10월 총선에서 제3야당으로 물러남
  -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 성향의 진보정당
- 녹색당
  - 1983년 창당하였으며, 환경보호, 기후변화 적극 대응, 사회정의, 참여 민주주의 강조

## 자. 지방행정

### ○ 일반사항

-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0개 주(Province)정부와 북부 지방의 3개 준주(Territory)정부
- 각 주정부의 정부형태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나, 주의회에는 상원 없이 단원제로 되어 있으며, 기구 명칭이 연방정부와 다소 상이
  - ※ 주정부 기구 : 주총독(Lieutenant Governor), 주의회(Legislative Assembly), 주수상(Premier, 주의회 다수당의 대표), 내각(Cabinet),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 캐나다 원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3개 준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양도받아, 자치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운영

####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관계

- 연방의회는 헌법에 주의회의 소관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가지므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강하며, 주정부의 자치권에는 한계 존재

※ 「1982년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정부는 자체헌법을 일반 입법 과정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주정부 내 체제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

- 그러나 실제 정국 운영에 있어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의견을 중시하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언어·종교 등을 고려, 안배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는 의원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권력집중적 성격이 약하고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주정부의 독특한 자치적 성격을 인정해야하기 때문
- 주정부도 지역 내 재산권 및 시민권 관련 사항, 노동문제, 사회보장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
- 연방정부 권한이 강한 부문은 국제 및 지방정부 간 무역·통상, 소득과 물가, 자유경쟁 및 외국인투자, 공해문제 등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부문은 형법, 혼인, 보건, 이민, 교육 등

# 캐나다의 선거제도

## 1. 캐나다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캐나다의 선거제도는 단일대표지역구별 다수결제로,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의원으로 당선된다. 선거는 Elections Canada라는 비정당적 기관이 관리하며, 연방, 주, 준주, 지방 등 다양한 수준에서 치러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가. 선거구의 재분배 : 캐나다의 선거구는 인구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10년마다 재분배됩니다. 재분배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수행하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재분배의 결과는 대표명령이라고 불리며, 현재 338개의 선거구가 있다.

나. 정당과 후보 : 캐나다의 선거는 정당과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당선제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를 선출하고 지원한다.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거나 독립적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후보는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고, 일정한 금액 이내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다. 투표와 개표 : 캐나다의 투표는 비밀투표로,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씩 투표한다. 투표는 선거일에 진행되며,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도 가능하고,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며,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가. 선거권

#### ○ 요건(선거법 제3조)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

※ 1993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선거권자가 선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수감된 선거권자가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격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나. 거주지 관련 규정(선거법 제8,9조)

- ‘통상 거주지(ordinary residence)’란 계속해 거주했거나 주소지로 삼은 곳
- 누구든지 오직 하나의 거주지를 가지며, 다른 거주지를 가질 때까지 상실되지 않고 일시적 부재로 인해 상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음.
- 일정한 장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다른 장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통상 거주지는 숙식하는 장소로 함.
- 주소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거주지로 간주함.
- 통상 거주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모든 사실을 참조해 선거 공무원이 결정

### ※ 보궐선거 거주지(선거법 제12조)

-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수정기간 개시일 당시의 거주지와 선거일의 거주지 투표구가 같은 선거구에 있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음.
-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수정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에 같은 선거구 내에서 하나의 투표구에서 다른 투표구로 평소 거주지를 바꾼 선거인은 새로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등록함.

## 나. 피선거권

- 요 건(선거법 제65조)18)19)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인 캐나다 시민
  - 결격사유(선거법 제65조)
    - 후보자등록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법 위반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 ※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우 5년간, 부패행위의 경우 7년간 피선거권 상실

- 주(province)의회의원
- 총독이 임명한 판사. 단, 국적법에 의하여 임명된 판사(citizenship judge)는 제외함.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 이전 선거의 후보자로서 보고서 제출연장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선거법」 제477조의59제1항에 규정된 신고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자

### 3.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 가. 선거일

- 선거소집령(선거법 제57조)
  - 선거관리청장(6)은 총독의 지시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선거소집령(Writs of Election)을 발부함.
  - 선거소집령에는 발부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6일 이후부터 최대 50일 이내에 선거일이 확정되어야 함.
  - 총선거의 경우 선거소집령 발부 날짜 및 선거일은 모든 선거구에서 같음.
  - 선거일은 마지막 총선거일로부터 4년 후 10월 세 번째 월요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주의 화요일로 함(선거법 제56.1조).
- ※ 선거소집령의 철회
  - 총독은 선거관리청장이 홍수, 화재 또는 다른 재난의 이유로 선거를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선거구에 대해 선거소집령 철회를 명할 수 있음.
  - 총독이 선거소집령 철회를 명하면 선거관리청장은 관보에 철회통지서를 공고하고 통지서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거가 개시되도록 새로운 선거소집령을 발부함.

- 신규 선거소집령의 선거일은 그 선거소집령 발행 후 3개월을 넘길 수 없음.

#### ○ 선거일 공고(선거법 제62조)

- 선거소집령 발부 후 4일 이내에 각 선거관리관이 서명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선거공고문(Notice of Election)을 공지함.
- 선거공고문에는 후보자등록 마감기한, 선거일과 시간, 선거일 후 7일 이내 선거결과 공표일시, 선거관리관의 사무소 주소를 기재함.

### 나. 선거인명부

#### ○ 작성 및 관리(선거법 제44조)

-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청장이 관리함.
-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됨.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각 선거인의 선택사항임.
- 선거인명부는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 예비선거인명부 → 수정선거인명부 → 공식선거인명부 3단계로 작성되고, 선거일에는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 of electors)를 사용(선거법 제93조~제107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후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 of electors)를 작성해야 함(선거법 제109조).

#### ○ 예비선거인명부(Preliminary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93~95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의 각 투표구의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다른 모든 정보와 함께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송부해야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선거인의 주소별이나, 선거인의 이름 알파벳순으로 배열해야 함.

- 명부작성

- 명부작성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각 선거 사이에 주기적으로 예비선거인명부를 갱신함.
- 갱신은 주와 지구 선거인명부, 운전면허청, 통계청, 국세청, 이민국 등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짐.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구의 예비선거인명부를 송부받은 때에 명부를 요청한 해당 선거구의 각 후보자에게 예비선거인명부 사본 1부와 전자적 파일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함(후보자의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4부까지 교부할 수 있음).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24일까지 예비선거인명부에 있는 각 선거인에게 등록확인통지서(notice of confirmation of registration)를 발송

- 등록확인통지서의 내용

- 선거인의 투표소 주소와 접근편의시설 보유 여부
- 선거일 투표시간
- 선거정보 문의 전화번호
- 사전투표날짜, 투표시간 및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 및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 수정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96~105조)

- 선거구의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구의 예비선거인명부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수정할 수 있음.



- 명부에 누락된 선거인 추가
- 명부에 있는 선거인에 관한 정보 수정
- 명부에 잘못 기재된 자의 명단 삭제(사망, 해당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 선거관리청장은 예비선거인명부 수정개시일을 확정해야 하며, 수정 기간은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임. 각 선거관리관은 명부수정 기간 중에 적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수정선거인명부에 추가된 선거인에게 등록확인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11일 전에 해당 선거구의 수정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함.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5일 전에 수정선거인명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함.

#### ○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106,107조)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일에 사용할 각 투표소의 공식선거인명부를 준비함.
- 각 선거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의 출생연도가 표기된 공식선거인명부 또는 수정선거인명부를 교부해야 함.
- 각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와 등록 정당에게 선거인의 출생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수정선거인명부 및 공식선거인명부 사본 1부와 전자적 파일 사본 1부를 각각 교부해야 함.

#### ○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109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각 선거구의 최종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 선거관리청장은 각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당선자에게 최종선거인명부의 사본 1부와 전산 파일 사본 1부를 각각 교부해야 함.

※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 받은 정당, 후보자, 당선자는 후원금 모금과 당원모집, 선거인과의 연락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예비선거인명부의 사본, 수정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후원금 모금 및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110조).

## 4. 후보자

### 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규정은 없음.
- 그러나 등록정당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일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청장에게 당내경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476,476-1조).
- 보고서 기재 내용
  - 해당 선거구명, 등록정당명
  - 경선일과 경선시작일
  - 경선후보자 이름, 회계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 경선 당선인 이름
- 당내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총 1,000CAD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당내경선운동비용으로 총 1,000CAD 이상을 지출한 때에 선거관리청장에게 당내경선운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476조의75).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내경선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체로 각 정당은 각 지역구의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LPC)
  - 후보자선출규정 제29조에 따라 전국선거운동위원회(National Campaign

Committee: NCC)가 후보자 추천과정을 진행함.

- NCC는 후보자승인위원회(Green Light Committee: GLC)를 설립해야 함.
- GLC는 각 선거구의 경선(Nomination Meeting)에 참가할 후보자를 평가 후 승인하거나 거부함.
- 해당 선거구 지구당(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은 여성후보자들과 선거구의 인구 및 언어 다양성을 반영하는 후보자들을 최선을 다해 모집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NCC에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경선을 개최할 수 있음.
- 각 선거구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 경선에 참가하는 후보가 두 명 이상일 때 당원들은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로 선출함.

※ 2019년 총선에 한해 재선에 도전하는 현 자유당 의원은 당에서 정한 지역사회 활동 및 모금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음.

####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 CPC)36)

- 보수당 당헌 제14조에 따라 전국후보자선정위원회(National Candidate Selection Committee: NCSC)가 후보자 추천과정을 진행함.
- NCSC와 선거구후보지명위원회(Electoral District Candidate Nomination Committee: CNC)의 승인을 받아야 경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승인을 받게되면 현직 의원과 새로운 후보는 경선에서 경합함.
- 현직 의원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NCSC와 CNC에 신청서를 내고, 인터뷰 및 서류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경선에 참가할 수 있음.
- 해당 선거구 지구당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 ※ 보궐선거(by-election)를 통해 당선된 의원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의원은 다른 후보자가 없다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총선 후보자가 됨.

## 나. 후보자 등록

### ○ 후보자 등록기간(선거법 제69,70조)

- 선거공고문 발행 시부터 등록마감 기한까지임.
- 후보자 등록마감일은 선거일 전 21일(월요일) 오후 2시까지
-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정오까지 신청서 접수장소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있어야 함.

### ○ 후보자 등록요건

- 후보자등록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인지 여부는 관계없음)
- 후보자등록신청서류(Nomination Paper)(선거법 제66조)
  - 후보자가 선서한 진술서: 후보자의 이름·주소·직업 및 소속 정당명, 선거사무관계자 (official agent)의 이름·주소, 회계감사 (auditor)의 이름·주소·직업 기재
  - 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서명한 후보자의 추천 승낙서(증인의 서명 필요)
  - 선거사무관계자의 취임동의서
  - 해당 선거구에서 최소 100명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서명자의 이름·주소 필요)
    - ※ 다만, 선거법 부대조항 III에 규정된 작은 선거구는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됨.
- 후보자 추천은 대부분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무소속 출마도 가능
- 정당은 각 선거구마다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해야 함(선거법 제68조).

○ 후보자 등록접수·수리·통지(선거법 제71,73조)

- 각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후보자추천서의 서명자 수와 이들의 선거권 결격 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서가 제출된 후 48시간 이내에 수리 확인 또는 수리 거부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함.
- 후보자는 추천서, 진술서 및 증명서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음. 추천이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은 추천서, 진술서 및 증명서의 전자문서를 추천마감 기한까지 접수해야 하고, 원본은 추천마감 기한 후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관에게 도착되어야 함.

※ 후보자는 등록마감일 오후 5시 이전에는 추천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직업에 대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75조).

**다. 후보자의 사퇴(선거법 제74조)**

○ 후보자는 등록일 오후 5시까지 자신이 서명하고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2명이 증명한 사퇴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해 사퇴할 수 있음.

○ 사퇴한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됨.

※ 후보자 사퇴·사망 시 추천마감 기한 전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선거법 제68조).

**라. 후보자의 사망(선거법 제77조)**

○ 등록정당이 지원하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5일 오후 2시부터 투표 마감 전에 사망한 경우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과 협의해 후보자 사망 이후 두 번째 월요일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로 다시 정함.

**마. 무투표 당선(선거법 제63조)**

○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2일(선거일 전 19일) 오후 2시까지 등록한

후보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소집령 뒷면에 결과를 기재해 선거관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선언

○ 소집령 반환 후 48시간 이내에 당선자에게 소집령의 인증된 사본 송부

#### 바. 후보자의 권리(선거법 제80조, 제81조의1)

○ 고용주는 고용인이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로서 일정기간 무급 또는 유급휴가를 신청할 때는 이를 허가해야 함.

사. 기탁금 : 2018년 폐지

## 5. 선거운동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선거광고(election advertising)’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음.

#### 가. 선거광고(선거법 제2조)

○ 선거광고는 선거기간 동안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문안을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정당이나 후보자가 관련된 특정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포함함.

#### 나.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 선거벽보(선거법 제322조).

- 주택이나 건물 임차인은 임대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할 수 있으며, 임대인 등은 이를 금지할 수 없음.
- 그러나 임대인 또는 대리인은 부착하는 선거벽보의 크기와 유형에 관한 합당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공공구역의 경우에는 금지할 수도 있음.

#### 다. 신문 이용 선거운동

- 신문을 이용한 신문광고 등은 언론의 자유에 맡겨두고 있고 특별한 규정은 없음.

#### 라.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Political Broadcasts)은 등록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청장이 임명하는 방송중재인을 통해 국가가 무료로 배정해주는 방송시간이 있고 방송시설의 재량에 따라 방송시간을 구입할 수도 있음.

#### 마. 집회 이용 선거운동

-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바.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s)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직·간접적으로 사이버 광고 공간을 아래 대상자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함(선거법 제325조의1).
  - 등록정당이나 적격정당, 정당연합
  - 후보자 당내경선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 제3자

#### 사. 호별방문 선거운동

- 선거운동에서 호별방문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후보자는 아파트 호별방문 또는 다세대 주거건물 공용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아파트(apartment, condominium), 외부인출입제한 주택지(gated community), 다세대 주거건물(multiple-residence)을 관리하는 자는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후보자와 그의 대리인의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됨.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공동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다만, 호별방문 및 선거운동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안정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건물, 대지,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다만, 그 장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 안전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아.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금지
  - 선거일에는 다음의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됨.
  - 선거일 확정장치 사용금지(선거법 제165조)
    - 누구든지 선거일에 특정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투표소에서 청취 가능 거리에서 확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일 선전물 등 게시 및 착용금지(선거법 제166조)
    - 누구든지 투표소 내·외부에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선전물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문양이나 깃발, 현수막 등을 착용·게시해서는 안 됨.
  - 선거광고 전송 금지(선거법 제323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가 문을 닫기 전까지 선거구 내 대중들에게 선거광고를 전송할 수 없음.



-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이미 전송된 선거광고나 이미 배부된 전단지, 선전물, 벽보, 현수 막은 예외로 함(선거법 제324조).

#### ○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하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현장연락소사무원(field liaison officer)과 선거관리관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당내경선, 후보자 추천과정 등에 기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선거법 제23조의2제8항, 제24조제6 항).
- 공무원과 참관인의 비밀준수(연방선거법 제323조)
  - 공무원이나 참관인이었던 사람은 선거법 또는 규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면서 취득한 선거인의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누설 또는 전달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부과 가능
-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연방선거법 제325조)
  -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됨.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부과 가능
- 공무원의 투표함, 투표용지 등에 대한 방해 금지(연방선거법 제339A조)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파손, 취득, 개봉하면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함.

#### ○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 선거벽보의 공공장소 첩부 금지(선거법 제322조제2항)

- 집주인 또는 분양아파트 대표는 주택 및 건물의 공용장소에 선거 벽보의 첩부를 금지할 수 있음.

- 선거광고 시설물의 제거(선거법 제325조제2항제b호)

- 간판, 벽보, 현수막에 의한 광고 게시가 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관계 당국의 직원은 제거할 수 있음.

○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금지

- 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 금지(선거법 제325조제1항)

- 누구든지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선거광고문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음.

- 캐나다 국외에서 방송금지(선거법 제330조)

-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방송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방송국의 시설을 사용, 보조, 교사, 권고,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선거기간동안 캐나다 밖에서 선거와 관련해 선거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됨.

○ 집회 관련 제한·금지

- 선거집회 방해 금지(선거법 제480조)

- 누구든지 선거소집령이 발급된 때부터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를 위한 공공집회를 의 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못함. 또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할 수 없음.

○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시각 전에 대중에게 이전에 알려

지지 않았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해서는 안됨(선거법 제328조).

※ 선거일 전날 정오부터 투표마감 시까지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였으나 1998년 위헌판결 받아 2014년 캐나다 정부는 기술적 이유로 관련 규정인 연방선거법 제329조 폐지

##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 허위사실 공표 금지(선거법 제91조)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음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대표자와 정당과 관련된 자의 의회법 등 법규 위반, 위반에 대한 조사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대표자와 정당과 관련된 자의 국적, 출생지, 학력, 경력 등

### -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선거법 제92조)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 ○ 기부행위 관련 제한·금지

### - 뇌물제공(Offering Bribe) 금지(선거법 제282조의7)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직·간접인 뇌물 제공 금지

※ 선거인이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뇌물을 받거나 받을 것에 동의할 경우에도 위법

## 6. 선거비용

### 가. 선거비용의 범위(선거법 제376조)

- 선거비용은 선거기간동안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사용된 모든 비용으로, 비화폐성 기부금(non-monetary contribution)을 포함.
- 기금모금 활동비용, 특정인을 후보자나 정당 대표로 선출하기 기해 소요된 비용은 제외함.
-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광고 또는 홍보자료 제작비용, 매체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자료 발행·배포·방송 비용, 선거사무관계자(agent) 등에 대한 인건비,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용, 연구 및 여론조사 비용 등

### 나.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477조의49~52)

- 선거법 제477조의5에 따라 결정된 선거구별 후보자 선거비용 기준 금액과 선거소집령 발행된 날의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로 정함.
-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는 선거관리청장이 매년 4월 1일 전 해당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한 조정계수를 관보에 발표(선거법 제384조)
  - ※ 조정계수는 1992년을 100으로 기준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일 전년도의 통계청 이 산정해 발표한 연도별 평균 소비자가격지수를 분자로, 1998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 이 산정해 발표한 연도별 평균 소비자가격지수인 108.6을 분모로 산정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즉결심판을 통해 2,000CAD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497조의4제1항, 제500조제1항).
- 예비(수정)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산정
  - 최초 15,000명의 선거인: 1명당 2.1735CAD
  - 이후 10,000명의 선거인: 1명당 1.092CAD

- 나머지 선거인의 경우: 1명당 0.546CAD

※ 제한액에 후보자의 여행, 생활, 기타 개인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 저인구밀도의 지역(km<sup>2</sup> 당 평균 10명 미만 선거구)

- 평균선거구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과 각 km<sup>2</sup> 당 0.31CAD 또는 위 ‘예비(수정)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산정’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단, 평균 선거구선거비용제한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선거인수 평균 이하 선거구

- 총선거 :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가 총선거에서 전체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평균선거인 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인 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평균선거인 수의 중간을 선거인 수로 선거비용 산출

- 보궐선거 :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가 직전 총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평균선거인 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인 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평균선거인 수의 중간을 선거인 수로 선거비용 산출

○ 회계보고(선거법 제477.59조)

-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만으로 사용할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이 계좌를 통해야 함(선거법 제477조의46).

-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의견서, 회계감사 의견보고서를 포함한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선거일 후 4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치자금회계보고서에는 선거비용지출내역, 정치자금 미지급금 내역서 및 후보자 대출내역, 세부내용, 기부금 총액과 200캐불 이상 후원자 명단 및 후원금액, 지출증빙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고의를 수반하는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0,000캐불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선거법 제497조의4, 제500조).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즉결 심판을 통해 2,000캐불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

#### 다. 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430조)

- 후보자를 추천한 등록정당의 선거구 예비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 또는 그 선거구의 수정선거 인명부의 선거인 수 중에 더 큰 값에 0.735캐불을 곱한 기준금액과 선거소집령 발행된 날의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로 정함.

※ 인플레이션 조정계수: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참조

#### ○ 선거일 연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 총독이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1개 이상의 선거구의 선거일 연기를 명하면 선거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늘어남.
- 해당 선거구 예비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 또는 그 선거구의 수정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 중에 더 큰 값에 0.735CAD를 곱한 기준 금액을 기존 선거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과 인플레이션 조정계수, 연장된 선거기간의 일수로 정함.

#### ○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정당을 대신하여 후보자에게 이전한 비용
-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통해 지출되었으나 선거사무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출 된 것이 아닌 비용

#### ○ 선거비용 초과금지(선거법 제431조)

- 등록정당의 사무국장은 정당을 대신해 선거법 제430조에 따라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해서는 안 됨.

- 등록정당 또는 제3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피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라.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 ○ 최초 보전분(선거법 제477조의73)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구의 선거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선인 이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모든 후보자의 이름, 선거비용제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통보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개인비용에 대한 부분보전금으로 통합세입기금에서 지급. 부분보전금은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선거관계자는 수령한 부분보전 금액이 과지급 반환기준(선거법 제477조의73제3항)에 해당 할 경우 초과분을 세입징수관에게 반환해야 함.

### ○ 최종 보전분(선거법 제477조의74)

- 선거관리청장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 및 회계보고서를 수령할 때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법의 비용보전 규정을 준수했다는 확인서 및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30% 이상을 지출했다는 증명서,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개인비용 변제의 최종 분할금이 기재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함.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통합세입기금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
- 최종 보전액은 이미 수령한 부분보전금액이 최종 보전액 계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지급됨.
- 선거비용 보전 공제: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

- 5% 미만 초과 : 초과 1CAD당 1CAD
  - 5% 이상 10% 미만 초과 : 초과 1CAD당 2CAD
  - 10% 이상 12.5% 미만 초과 : 초과 1CAD당 3CAD
  - 12.5% 이상 초과 : 초과 1CAD당 4CAD
- 선거비용 보전 공제액이 최종 보전액 보다 많은 경우 선거사무 관계자는 이전 수령한 부분 보전금(최초 보전분)에서 그 차액만큼 세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함.

#### 마. 정당의 선거비용보전(선거법 제444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법 제437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의 선거비용 보고서를 접수한 후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정당이 총 선거에 지출한 선거비용 50%와 선거 관련 경상비용의 90%(최대 250,000CAD)의 보존비용 금액이 명시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
  - 선거관리청장이 등록정당 및 사무소의 선거비용보고서를 제출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
  - 회계보고서에 감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
  - 등록된 정당의 추천 후보가 선거의 총 유효투표총수 2% 이상을 득표하거나, 정당이 추천 한 후보자가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확보한 경우
- 선거비용 보전 공제 :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
  - 5% 미만 초과 : 초과 1CAD당 1CAD씩
  - 5% 이상 10% 미만 초과 : 초과 1CAD당 2CAD
  - 10% 이상 12.5% 미만 초과 : 초과 1CAD당 3CAD
  - 12.5% 이상 초과 : 초과 1CAD당 4CAD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를 수령하면 통합세입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등록정당에 보전함.

#### 바. 무료 정견방송(선거법 제345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송사는 모든 등록 정당에게 총선거의 선거 소집령 발행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방송법에 따라 무료로 정견방송 시간을 배정해야 함.
- 서면으로 방송시간 할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정당에는 2분, 그 외의 정당에는 요청한 시간에 대해 가능한 시간 비율에 따라 방송시간을 배정함.
  - 무료방송시간 제공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 산정 시 제외함.

## 7. 투 표

### 가. 투표시간

- 지역별 투표시간(선거법 제128조)
  - 뉴펀들랜드, 대서양, 중앙시간 지역: 오전 8:30부터 오후 8:30까지
  - 동부시간 지역: 오전 9:30부터 오후 9:30까지
  - 산악시간 지역: 오전 7:30부터 오후 7:30까지
  - 태평양시간 지역: 오전 7:00부터 오후 7:00까지
- 한 선거구 내에 2 이상의 지역시간이 적용될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역시간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음(선거법 제130조).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궐선거가 같은 날, 같은 지역시간에 실시되는 경우의 투표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8:30까지로 함(선거법 제131조).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 선거권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선거일에 연속한 3시간 동안의 투

표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선거법 제132조).

- 고용주는 허가한 투표시간 동안 근로자가 직장에 없었다는 사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음(선거법 제133조).

#### 나. 투표구(선거법 제538조)

- 각 투표구는 일반적으로 최소 250명의 선거인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투표구는 직전 실시한 연방선거의 투표구를 유지함.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관리관에게 관할 선거구의 투표구 조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관은 시나 주(municipal and provincial authorities)가 제출한 투표구획정안의 투표소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조정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승인 하에 장애인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로 구성된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음.

#### 다. 투표소

- 각 투표구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투표소를 설치함(선거법 제120조).
- 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평지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학교, 연방정부청사, 공공건물에 설치함(선거법 제 121,122조).
  - 기표소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때 밖에서 보이지 않게 차단되어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기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기표소 안에 기표에 사용할 흑색 연필을 비치해야 함.
- 장애인·노인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 투표구에는 이동투표소(mobile polling station)를 설치할 수 있음.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소별 운영시간을 정하고, 이동투표소의 일정을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함(선거법 제125조).

○ 기관·시설 안에 설치된 투표소(선거법 제157조)

- 선거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동 시설책임자의 승인하에 투표함.
- 투표용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들고 다니며 방마다 환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의 대리인은 1명을 초과해 참관할 수 없음.

라. 투표용지(선거법 제117조)

○ 후보자의 이름은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에 따르며, 이름이 동일한 후보자의 경우 직업·주소를 함께 기재

※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니셜(initial)만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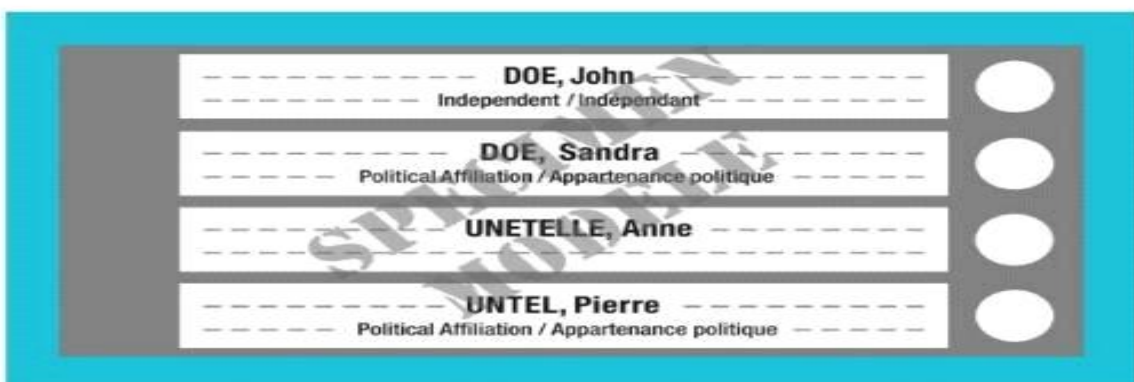
○ 게재순위는 이름 알파벳순이며, 정치적 소속단체가 명시된 후보자는 후보자 이름 하단에 기재

※ 등록정당의 명칭 및 약칭은 정당의 대표가 제시한 내용으로 기술

○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19일 전 오후 2시 이후 가급적 신속하게 투표용지를 인쇄하여야 함(선거법 제116조).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매겨야 하며 인쇄해 납품한 자의 이름을 적어야 함.

○ 투표용지(예시)



## 마. 투표절차

- 투표소에 출입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음(선거법 제135조).
  - 현장연락소 사무원,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청장과 소속 직원, 선거관리관과 대리인, 후보자와 후보자의 대리인 2명, 거동불편자의 투표보조인 1명, 참관인
- 후보자의 대리인(candidate's representative)은 투표시간 동안 자유롭게 투표소를 입·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한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로 이동도 가능하지만 한번 투표소를 떠난 경우에는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음.
  - 또한 선거인의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다른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음(선거법 제136조).
  -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녹화할 수 없으며,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됨.
- 투표개시 전 사전준비(선거법 제138~140조)
  - 투표사무원은 투표 개시 전에 후보자, 후보자의 대리인 및 선거권자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모든 투표용지의 뒷장 서명란에 약식서명(initials)을 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봉인해 책상 위에 비치
  - 후보자나 대리인이 투표개시 15분 전에 출석한 경우 투표소 내 투표용지를 계수하고 관련 서류를 점검할 수 있음.
- 투표 진행 절차
  - 선거권자가 주소와 이름을 말하면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후 선거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함(선거법 제143조).
    - ※ 신분증의 종류: 선거인의 사진·이름·주소가 기재된 정부(연방, 주, 지방, 공공기관)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선거관리관이 승인한 기타 신분증(이 경우 2가지를 제출해야 함)

※ 공식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다음의 경우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149조).

- 투표소 이전확인서, 등록확인서를 취득 제출하는 경우
- 충분한 신분증명을 제시하고 선거사무원이 선거관리관과 함께 선거인이 예비선거인명부 또는 명부 수정기간 중에 등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 반대편 작은 원안에 ‘×’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한 후 접어서 투표사무원에게 줌(선거법 제151조).
- 투표사무원은 투표지 뒷면의 약식서명과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선거권자와 다른 참석자들 앞에서 일련번호(counterfoil)를 절취한 후 투표지를 선거권자에게 주면 선거권자가 투표함에 투입함.

#### 바.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등

##### ○ 특별투표(Special Voting)

-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특별투표신청서를 제출해 우편으로 투표하는 군인투표, 재외투표, 교도소 내 투표, 선거관리관 사무실에서 투표, 거소투표 등을 말함.
- 선거관리청장은 특별투표관리장(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을 임명하고 특별투표 관리장은 특별투표관리를 총괄함.
- 선거관리청장은 총리 추천 3명, 제1야당 대표가 추천한 2명, 하원에서 세 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 대표가 추천한 1명 등 최소 6명의 특별투표사무원(Special ballot officers)을 임명함 (선거법 제183조).

##### ○ 군인 선거권자(Canadian Forces Electors)의 투표

- 군인 선거권자란 군대에 소속된 정규군, 예비군, 특수군을 의미함. 투표 기간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까지(6일간)이며, 투표기간 동안 3일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투표소를 운영해야 함.

- 특별투표용지의 기표방법은 자서식이며(후보자 이름, 약자, 성을 기재), 동일한 이름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자의 정당명 등을 기재함(선거법 제213조제3항).
-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지를 접어 속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다시 겉봉투에 넣고 봉인한 후 군대에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수도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에 있는 특별투표 관리장에게 선거일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도록 송부(선거법 제214조)
- 부대 투표사무원이 배치된 경우 병상에 있는 군인 선거권자의 투표를 위해 입원실마다 방문하고, 부대 선거사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 등이 소속된 부대에 임명된 부대 선거사무원이 입원 중인 군인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선거법 제217조)
- 근무 또는 휴무로 투표기간 동안 소속 부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른 부대에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18조).

○ 국내 선거권자의 특별투표(Electors Residing in Canada)

- 선거소집령 발령 후 등록 및 특별투표신청서를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관이나 특별투표관리장에게 제출한 선거권자는 우편투표 할 수 있음(선거법 제232조).
- 특별투표신청서에는 선거권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신분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우편용 주소 등을 포함해야 함(선거법 제233조).
-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관리관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우편투표 방법으로 투표함(선거법 제 237조의1조).
-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수도지역에 있는 특별투표관리장에게 도착해야 함(선거법 제 239조).

○ 거소투표(voting at home)

- 문맹·신체적 장애로 선거관리관의 사무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43조의1).
-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선거권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선거권자가 선정한 증인의 참관 하에 선거권자의 투표를 보조해야 함.

○ 수감선거인(Incarcerated Electors)의 투표

- 교도소에 수감된 자 중 선거법에 따라 투표할 자격을 갖춘 자는 선거일 12일 전에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45조).
- 투표소는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8시 이후에 닫음(선거법 제250조제2항).
- 투표는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투표지는 수도지역에 있는 특별투표 관리장에게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송부함(선거법 제261조).
- ※ 필요한 경우 독방이나 병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선거법 제255조).

사. 사전투표(Advance voting, Early voting)

○ 사전투표소 설치(선거법 제168조)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에 1개 또는 복수의 투표구를 통합해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야 함.
- 선거소집령 발령 이후 4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2개의 사전투표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등록

- 사전투표소에서는 수정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를 사용하며, 이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과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선거사무원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록확인서를 작성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함(선거법 제 169조).

- 위의 경우 선거인명부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함(선거법 제170조).

#### ○ 사전투표 절차

- 사전투표는 선거일 10일 전 금요일부터 7일 전 월요일까지(4일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임(선거법 제 171조).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16일 전인 토요일 이전에 사전투표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문 사본을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청장에게 송부해야 함(선거법 제172조).

#### ※ 공고내용

- 사전투표구를 구성하는 투표구수
- 각 사전투표소의 위치
- 사전투표를 집계하는 장소
- 개표시작시간(투표소 마감 후 또는 선거관리관의 사전 승인 시 투표소 마감 1시간 전)
-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자의 명단(record of votes cast)을 작성해야 하며(선거법 제174조), 사전투표 마감 후 지체없이 선거관리관에게 사전투표자 명단 원본을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176조).
-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사무원은 4일간 매일 사전투표 시작 시간 오전 9시에 투표함 검사와 투표함 봉인을 실시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투표함을 비치함(선거법 제175조 제1항).
- 매일 사전투표 마감 시각 오후 9시에 투표사무원은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하에 선거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마감해야 함(선거법 제175조 제2항).



- 다른 투표함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검사와 봉인의 조치를 취해 투표함을 추가 투입(선거법 제175조제3항)
- 후보자 또는 대리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함에 대해 매일 사전투표 마감 시 일련번호를 표시해 둘 수 있음(선거법 제175조제4항).
- 선거사무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선거관리관의 지시 하에 선거일 개표 시까지 보관해야 함 (선거법 제175조제5항). 선거관리관은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표함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선거관리청장에게 통지해야 함 (선거법 제175조제6항).

○ 선거인명부에서 사전투표자 삭제

- 선거관리관은 사전투표자 명단을 송부 받은 즉시 공식선거인명부 (official list of electors)에서 삭제해야 하고, 공식선거인명부가 이미 투표소로 배부된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게 지체없이 사전투표자를 삭제하도록 해야 함(선거법 제176조).

아. 보조투표(Assisted voting)

○ 투표사무원의 투표 보조(선거법 제154조)

- 선거권자가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권자의 요청에 따라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사무원은 다른 투표사무원의 입회하에 해당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함.
- 시각장애 선거권자가 요청할 경우 투표사무원은 기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Template)를 제공해야 함.

○ 친구 등의 투표 보조(선거법 제155조)

- 선거권자가 투표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선거권자의 친구, 배우자, 동거인, 친척 또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친척이 선거권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권자의 기표를 보조할 수 있음.

○ 언어통역사 및 수화통역사 등 활용(선거법 제156조)

- 투표사무원은 선거권자가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어 또는 수어가 가능한 자를 1명 배치할 수 있음.

○ 특별투표에서 보조

- 군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병상에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를 위해 부대 투표사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병원이나 기관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 입원실마다 방문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음(선거법 제217조).
- 군인 선거권자 중 신체장애로 인해 부대 내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문맹이나 신체장애로 수감된 선거권자는 투표사무원이 신고서 작성과 기표를 대신할 수 있음(선거법 제216·259조).
- 문맹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권자가 특별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관리관 사무실 투표소를 방문한 경우 지정된 공무원은 신고서 작성과 투표를 대신 할 수 있음(선거법 제243조).

자. 코로나19 투표대책

○ 2021.9.20. 하원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짐.

○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분산을 위한 선거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는 우편투표를 하도록 함.

-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다만, 마감시간 이후 확진 등의 통보를 받은 자는 사전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음)

## 8. 재외선거(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하원의회의원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실시)

###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선거법 제220조)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

###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를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선거청에 보내야 함(선거법 제221조).
- 재외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신원증명, 생년월일, 평소 거주지 주소, 국외우편주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선거법 제223조).
- 등록서 및 특별투표신청서에 기재된 캐나다 내의 주소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재 후에는 변경될 수 없음(선거법 제224조).
- 재외선거인명부 삭제(선거법 제226조)
  - 선거관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구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이름을 등록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사람, 사망한 사람 및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삭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와 캐나다에 귀국한 사람,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해야 함.

### 다. 투표방법 : 우편투표(선거법 제227~229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소집령 발령 이후 등록신청서 및 특별투표신청을 승인하는 대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인에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특별투표용지와 속봉투 및 겹봉투 각 1부를 우편으로 송부
-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고 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속봉투를 겹봉투에 넣어 겹봉투의 신청란에 서명하고 봉합.

- 선거인은 봉합된 겹봉투를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사관·영사관·고등위원회, 군부대 또는 선거관리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제출
- 투표 봉투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수도지역 특별투표관리장에게 도착해야 함.

#### 라. 개표방법(선거법 제263, 280조)

- 우편투표 봉투는 선거관리청에서 접수해 개표하고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알려 선거구 개표 결과와 합산함.

## 9. 전자투표

### 가. 도입배경

- 투표율 제고와 선거현대화를 목표로 추진
-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며 특히, 지리적 특성상 외진 곳이 많아 해당 지역 선거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음. 따라서 전자투표는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함.
- 2018.12. 「선거현대화법(Elections Modernization Act, Bill C-76)」을 제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선거방식에 대해 연구·준비하고 있음.

### 나. 법적근거(선거법 제18조의1)

- 선거관리청장은 대안적 투표수단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향후 선거에서 대안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음.
- 선거관리청장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들을 위한 투표기술을 도입·발전시켜야 하며, 기술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선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온타리오, 서스캐처원주 각 주정부가 「지방선거법 (Municipal Elections Act)」을 개정해 지방에서 전자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 실시사례

### ○ 연방선거(하원의원 선거)

- 2013년 보궐선거 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처음 시범실시한다고 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면적인 도입은 하고 있지 않음.

### ○ 주 선거(Provincial Election)

- (온타리오 주) 2016년 주 선거에서 최초로 전자개표 실시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2016년 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 투표소투표, 온라인 투표, 전화투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노바스코샤 주) 2021년 주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함.

### ○ 지방선거(Municipal Election)

- (앨버타 주) 2004년 에드먼톤(Edmonton)시 사전투표에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실시
- (뉴브런즈윅 주) 2004년 세인트존(Saint John)시에서 광학스캔 사용
- (노바스코샤 주) 2008년 4개 시에서 인터넷 투표, 2012년 16개 시에서 인터넷 투표, 2016년 20개 시에서 인터넷 투표와 전화투표 (telephone voting)를 실시함.
- (온타리오 주) 2002년 윈저(Windsor)시 보궐선거와 2006년 킹스톤(Kingston)에서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를 실시하였고, 2003년 오타와(Ottawa)에서 광학스캔, 2003년, 2006년, 2014년, 2018년(150개 시) 많은 시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 그리고 2010년에는 33개 시에서 전화투표 및 인터넷 투표를 실시함.

## 10. 개 표

### 가. 투표소

- 투표 마감 직후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사무원이 또 다른 투표사무원, 후보자나 대리인(모두 불참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선거인)의 입회 하에 개표 시작(선거법 제283조)
-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소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에 관한 공고문에 명시된 장소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투표사무원과 선거관리청장이 지시에 따라 특정된 선거공무원이 함께 참석하여 개표함(선거법 제289조).
  - 사전투표의 개표도 후보자나 그 대리인(모두 불참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선거인)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전에 사전투표를 개표할 수 없음.

### 나. 개표절차(선거법 제283조제3항)

-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수와 선거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 당일 선거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투표한 선거인 수를 기재하고 목록과 봉투에 서명
- 훼손된 투표용지나 미사용 투표용지를 계산해 각각 봉투에 넣고 겉면에 각 매수를 기재하고, 투표한 선거인의 수와 훼손 또는 미사용 투표용지의 수를 선거관리관이 배부한 투표용지 수와 대조
-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개표상 위에 꺼냄.
- 각 투표지 수를 확인해 출석한 개표참관인들에게 투표지를 확인시키고 투표사무원은 개표록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후보자 이름 옆에 기록
- 선거관리청장은 투표 마감 후 지체없이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개표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별 유효득표수와 전체 무효표를 기재한 개표 결과를 통보해야 함(선거법 제280조).

- 선거관리관은 투표함이 모두 접수된 후 선거사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록 원본과 선거법 제280조에 따라 통보된 개표 결과를 확인해야 함. 다만 선거 결과 확인을 위해 정해진 날짜에 접수되어야 할 투표함과 관계 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 결과 확인을 연기해야 함(선거법 293조).
- 선거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직후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의 득표수가 적힌 증명서의 원본을 선거관리청장에게 보내고, 사본은 각 후보자와 대리인에게 보내야 함(선거법 제297조).

#### 다. 특별투표의 개표

- 특별투표의 개표는 특별투표관리장의 감독 하에 특별투표사무원들이 실시하며, 특별투표사무원은 서로 다른 등록정당을 대표하는 2명을 1조로 함(선거법 제263, 264조).
- 개표는 선거관리청장이 지정한 날에 하되, 지정된 날짜가 없으면 선거일 5일 전 수요일에 실시함(선거법 제266조).
- 개표가 끝나면 특별투표관리장은 지체없이 투표결과를 선거관리청장에게 보냄(선거법 제271조).
  - 모든 선거구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
  - 각 선거구의 총 투표수
  - 각 선거구에서 무효처리된 투표지 수
- 선거관리청장은 투표 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포함한 개표 결과를 알려야 함(선거법 제280조).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에게 받은 결과와 특별투표의 개표 결과를 합산해 그 개표 결과를 특별투표규정에 의한 투표 결과로 공표함.

## 라. 법원에 의한 재개표(Judicial Recount)

### ○ 선거관리관의 재개표 신청(선거법 제300조)

- 투표 결과 당선자와 후보자의 득표 차이가 총유효투표총수의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 결과 확인 후 4일 이내에 재개표를 요청해야 함.
-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재개표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사는 재개표 요청을 접수한 후 4일 이내로 재개표 날짜를 정해야 함.

### ○ 선거인의 재개표 신청(선거법 제301조)

- 선거인은 선거관리관이 선거 결과 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판사에게 재개표를 신청할 수 있음.
-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재개표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사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신뢰할 만한 증인 진술이 있는 경우 재개표 날짜를 정해야 함.
  -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부정확하게 개표했거나 무효처리하였거나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를 부정확하게 기재했다는 내용
  - 선거관리관이 부정확하게 투표수를 합산했다는 내용
- 신청자는 최다 득표한 후보자의 비용을 위한 보증금 250CAD를 법원 직원 또는 수석 서기에게 예치해야 함.

### ○ 재개표 절차(선거법 제304조)

- 판사는 투표록에 보고된 투표수를 합치거나 유효한 투표지 또는 투표사무원이나 선거관리청장에 의해 반송된 모든 투표지를 다시 집계해 재개표를 실시



- 판사는 모든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 투표지·미사용 투표용지·반송된 투표용지·무효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인된 봉투를 개봉할 수 있으며, 다른 서류들은 개봉할 수 없음. 재개표를 마칠 때 판사는 모든 투표지를 각각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지체없이 규정된 서식에 따라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의 원본은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각 후보자에게 교부해야 함(선거법 제308조).
  - 재개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투표 결과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는 재개표를 신청한 자가 최다득표자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판사가 재직하는 법원의 재판비용표에 가장 가까운 비용을 부과해야 함(선거법 제309조).
- ※ 재개표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8일 이내 해당 주 최고법원 또는 항소법원 판사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311,312조).

#### 마. 투표의 효력(선거법 제284조)

##### ○ 무효투표

- 투표사무원이 제공하지 않은 투표용지인 경우
- 후보자 이름 우측 원형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경우
- 후보자가 아닌 자에게 투표한 경우
-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선거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나 기호를 기재한 경우

##### ○ 무효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투표사무원이 투표지에 글씨, 숫자 또는 표시를 기입한 경우
- 투표사무원이 부분(counterfoil)을 제거하지 않은 투표지
-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권자의 투표지역 번호를 기재한 투표지

## 11. 당선인

- 가. 선거관리관은 선거 결과 확인을 완료한 6일 후(재개표를 한 경우 재개표 완료 즉시) 지체없이 선거 소집령 반환 보고서를 작성해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하원의원 당선인으로 결정(선거법 제313조).
- 나. 최다득표자가 2명인 경우 선거관리청장은 즉시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없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하원의장(하원의장이 부재한 경우 2명의 하원의원)에게 보내야 함(선거법 제318조).
- 다. 또한 관보에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들의 이름과 함께 득표수가 동일하여 해당 선거구 당선자가 없어 「캐나다 의회법(Parliament of Canada Act)」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함.

## 12. 재선거와 보궐선거

### 가. 실시사유

- 연방의회의원과 주의회의원의 겸직(의회법 제22~24조)
- 사직(의회법 제25~27조)
- 사망, 공직의 수락, 관할 법원의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의회법 제28조) 최다득표수가 동일해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선거법 제318조)
-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이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선거가 무효 또는 선거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공석이 발생할 경우(선거법 제524,531조)

### 나. 실시절차(선거법 제57조, 의회법 제28~31조)

- 하원에 공석이 발생하면 하원의장은 지체없이 보궐선거 선거소집령 발부를 위한 증서(Warrant)를 선거관리청장에게 발송해야 함.

- 총독(Governor General)은 선거관리청장이 하원의장의 증서를 수령한 후 11일에서 180일 사이에 총리(Prime Minister)와 협의해 보궐선거 날짜를 결정해야 함.
  - 총선 예정일 9개월 이내에 생긴 결원의 경우, 의원 임기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재·보궐선거 소집령이 발부되지 않음(의회법 제31조).
- 선거일은 선거소집령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최소 36일 이후 50일 이내로 정함.
- 보궐선거일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청장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선거소집령을 발부하며, 만일 선거소집령 발부 후 의회 해산으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궐선거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
- 보궐선거는 총선거와 특별투표, 거주요건, 선거비용 보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실시됨.

### 13. 선거에 관한 쟁송

#### 가. 소 제기(선거법 제524조)

-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관할 법원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당선된 후보자가 후보자 자격이 없을 경우(선거법 제65조)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 다만, 선거법 제301조제2항에 따라 요청된 재개표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나. 소송절차

- 각 주의 최고법원 또는 대법원은 소 제기에 대해 지체없이 약식으로 처리해야 함. 하지만 특정상황의 경우 소 제기 내용을 심리하기 위해 구두증거를 허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525조).

- 소 제기 시 보증금 1,000CAD를 예납해야 하고(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상할 수 있음), 캐나다의 법무장관, 선거관리청장,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소 제기 사실이 송달되어야 함(선거법 제526조).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소는 아래 사항 중 가장 늦은 시점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선거법 제527조).
  - 관보에 소가 제기된 선거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 일관성 없는 불법행위, 사기,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소 제기자가 처음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음(선거법 제528조).

#### 다. 판결

- 법원은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고, 소 제기가 소송을 남용하거나, 소송의 중요성이 적거나, 신의성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음(선거법 제531조).
-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해당 판결이 내려진 후 8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대법원은 지체 없이 약식으로 심리해야 함(선거법 제532조).

## 14. 벌 칙

### 가. 총칙(Offences General Provisions)

- 누구든지 선거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소집령이 발행된 때부터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를 위한 공공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공모하는 자는 위법행위의 책임이 있음(선거법 제 480조).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선거관리청 관계자, 선거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 후보자 등으로 사칭하거나 오도하는 사람은 유죄임(단, 풍자나 패러디와 같이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선거법 제480조의1).
-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선거기간 동안 형식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청장, 선거관리관,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를 대중을 오도할 목적으로 배포, 전송, 공표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481조).
-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적인 컴퓨터 사용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482조).
  - 부정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 음향, 기계 또는 기타장치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을 가로채는 행위
  - 컴퓨터 데이터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행위
  - 컴퓨터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접근권을 거부하는 행위 누구든지 캐나다 선거관리청 위원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 의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위 또는 오도된 진술이나 서면을 통해 고의로 방해 또는 저지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482조의1).

#### 나. 개별 위법행위

- 선거사무원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84조)
  - 모든 전직 선거사무원이 선거문서와 선거 용품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
  - 선거관리관이 고의로 필요한 선거 절차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행위
  - 선거사무원이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관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 무단으로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현장 담당공무원과 선거관리관이 정치적으로 당파적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관리관이나 부선거관리관이 의도적으로 또 다른 지위로 행동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을 사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고의로 선거문서나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
- 선거인등록 위법행위(선거법 제485조)
-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선거인등록 관련 금지행위 위반
- 후보자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6조)
-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아파트 건물, 무료개방 공중장소 등의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 결격자가 추천서에 서명하는 행위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진술이나 발표를 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허위 후보자 사퇴 성명 발표
- 선거인명부 수정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7조)
- 부적절한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
  - 권한 없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 사용
  - 기타 선거인명부 관련 금지행위
- 투표 준비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8조)
-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행위
  - 허가받은 투표용지 인쇄업자가 투표용지 또는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고의로 반납하지 않은 행위

- 투표용지의 위조, 고의로 투표용지 추가 인쇄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행위
- 비밀 칸막이가 있는 투표함을 제작하는 행위 등

○ 투표(사전투표 및 특별투표 포함)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9~491조, 제491조의1, 제491조의2)

- 고용주의 투표 시간 허가 불이행 또는 투표 시간 제공에 대해 급여 삭감
- 금지된 방식으로 확정기를 사용하는 행위
- 투표소 내에서 상징물 등을 착용하는 행위 및 선거자료 전시 행위
- 투표 당일 선거인등록을 금지하는 행위
- 사전투표 재등록을 금지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고의적으로 사전투표를 막는 행위와 사전투표 기록을 하지 않은 행위
- 선거사무원이 사전투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한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않은 행위
- 선거관리관이 재투표 용지와 특별투표 용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 특별투표에서 투표하지 말아야 할 투표를 접수하거나 투표해야 할 투표를 접수하지 않을 의도 로 투표 접수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 특별투표의 집계 임무를 위반한 경우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한 경우
- 기표된 투표지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 금지 등 특별투표 관련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개표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2조)

- 선거관리관이 투표함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개표 절차와 관련한 의무(선거법 제283~288조)를 위반하는 행위
- 사전투표에서 고의로 개표시간 이전에 개표 한 행위

○ 선거관리관 선거 결과 확인 관련 위법행위

- 선거 결과 검증을 위한 선거관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선거법 제493조)
- 선거관리관이 당선자 선언 및 선거문서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선거법 제494조)

○ 통지 및 보도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5조)

- 선거광고 허가 표시 불이행
- 온라인 플랫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요구되는 기간 동안 당파적 광고 메시지와 선거광고 메시지의 등록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
- 등록 정당, 단체, 지명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불이행, 선거여론조사 결과 전송일을 통지받은 여론조사에 대한 후원 불이행,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고 불이행, 승인된 통계방식에 근거하지 않은 조사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 금지기간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전달하는 행위
- 선거벽보 첩부 방해 행위 및 선거광고 철거 규정 위반 행위



- 고의로 해외방송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 방송시간 이용 배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 방송비용 또는 광고지면 최저가격 책정 불이행 행위
- 금지기간 중 고의로 선거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등
- 선거기간 중 정당 활동, 선거광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선거법 제496조)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부담, 선거광고에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경우, 회계책임자 선임 불이행, 무기명 기부금 사용 행위, 외국인의 기부금 사용행위, 요청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미제출 등
- 기타 회계 및 재정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 선거구 정당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의 2), 당내경선 후보자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의3) 등

#### 다. 처벌(선거법 제500조)

-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위법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고, 양자를 병과할 수 있음.
  - (엄중책임 위법행위) 2,000CAD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고의 위법행위-즉결심판) 5,000CAD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10,000CAD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50,000CAD 이하의 벌금
  - (고의 위법행위-선택적 기소) 약식 유죄판결의 경우 20,000CAD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 50,000CAD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위 처벌에 추가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분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 추가 벌칙(선거법 제501조제1항)

-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위법행위의 성격과 위법행위의 발생과 관련된 제반 상황 및 이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처벌을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명령에 규정된 사회봉사
  -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
  - 위법행위로 재정적 혜택을 얻는 경우 그 재정적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징수관에게 지불
  - 의무를 불이행 인한 위법행위의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
  - 법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조치 등

○ 부가적 벌칙(선거법 제501조제2항)

- 등록된 정당 및 정당의 대표, 회계책임자, 또는 간부 중 한 사람이 위법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의 성격과 제반 상황 및 부과된 다른 처벌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선거관리청장에게 정당 등록말소 지시
  - 정당 등록말소를 지시한 경우 정당 대표 또는 법원이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청산하도록 함.
  - 청산을 명한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법원이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정당의 자산의 청산을 명함.

라. 위법 및 부패행위(선거법 제502조)

○ 위법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후보 사퇴 허위성명서 공표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해외방송금지규정 위반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등이 고의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 과정 방해나 풍기 문란행위 도모 또는 선동 행위 후보자의 허위선언 또는 허위선언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 후보자가 의회에서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정에 서명하는 행위

#### ○ 부패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2회 투표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인등록부에서 명단을 삭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인등록과 관련한 위반행위
- 부적격 상태에서 후보자 추천서 서명을 하는 행위
- 허위 이름으로 투표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와 관련해 뇌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 ○ 위법 및 부패행위의 결과

- 이 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선거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는 자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거나, 국왕이나 총리가 임명하는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
- 위법행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 부패행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년 동안

# 캐나다의 선거관리기관

## 1. 선거관리기구

가. 연방(Federal) :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

- 연방 차원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 1920년에 설치되었으며 퀘벡주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은 평상시 500명 정도, 선거기간에는 약 235,000명 정도임.
- 직 무
  - 연방차원의 총(보궐)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 선거인명부의 관리, 선거관리관(RO)의 임명 및 지침 제공
  - 투표절차·후보자등록에 대한 안내, 학생들에게 선거절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매 10년마다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연방선거구획정위원회에 법적·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 선거광고를 하려고 하는 정당·제3자와 지구당·당대표 및 후보자 경선의 등록
  - 후보자·정당·제3자·지구당·당대표선거후보자(leadership contestant) 및 당내경선후보자(nomination contestant)의 기부금 공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반환
  - 대체 투표방법 연구, 의회 승인 하에 향후 선거에 적용할 대체 투표 절차 실험
  - 외국의 선거 기관, 선거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

## 나. 주(State)와 준주(Territory)

○ 선거관리청으로부터 독립된 각 주의 선거관리기관이 별도로 있음.

주 명	선거관리기관명	주 명	선거관리기관명
온타리오	Elections Ontario	뉴브런즈윅	Elections New Brunswick
퀘벡	Elections Quebec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	Elections Newfoundland and Labrador
브리티시콜롬비아	Elections British Columbia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Elections Prince Edward island
알베르타	Elections Alberta	유콘 준주	Elections Yukon Territories
마니토바	Elections Manitoba	노스트웨스트 준주	Elections Northwest Territories
새스캐추완	Elections Saskatchewan	누나부트 준주	Elections Nunavut Territories
노바스코샤	Elections Nova Scotia		

○ 각 주마다 주 선거법과 선거비용 및 기부내역 공개방법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각 주의 선거관리청장(Chief Electoral Officer)과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등 선거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를 함.

※ 주(state) 내의 시(Municipal)나 카운티(County),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선거가 각 지역별 2~5년주기로 별도 실시됨.

## 2. 선거사무관계자

### 가. 선거관리청장과 부선거관리청장(Assistant Chief Electoral Officer)

○ 선거관리청장은 하원의 의결에 의해 임명되고 차관급 상당의 지위를 가지며, 임기는 10년 단임.

- 정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상원 및 하원의회의 해직 공동청구 (joint request)에 따라 총독이 해임하는 경우 외에는 신분이 보장됨 (선거법 제13, 15조)
- 임명되기 전 7년 이내에 선거법·국민투표법 또는 주·시 학교이사회 선거와 관련된 주의 법에 따라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

나.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RO)과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선거법 제24, 29조)

- 선거관리관은 각 선거구에 1명씩 두는 집행·감독의 실질적 책임자로 선거관리청장이 임명. 임기는 10년이며 연임 가능
- 직 무
  - 선거관리관은 선거의 적정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 주요 직무는 선거소집령의 수리, 입후보등록일 및 선거일의 고시, 투표소 설치, 선거인명부의 작성, 투표용지의 작성, 당선인의 결정, 선거 결과 보고 등(선거법 제64, 113, 120조)
- 선거관리관은 임명을 받은 후 부재, 궐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부선거관리관을 임명하고 선거관리청장에게 보고함(선거법 제26, 28조).

다. 선거사무원(Election Officers)(선거법 제22조제1항, 제32조)

-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에 선거관리관은 다음의 선거사무원을 임명
  - (선거법 제23조의1) 현장연락소 사무원(field liaison officers)
  - (선거법 제26조)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
  - (선거법 제181조) 특별투표 규정 관리자(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
  - (선거법 제183,184조) 특별 투표사무원(special ballot officers)
  - (선거법 제248조) 연락사무원(liaison officers)

○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는 자(선거법 제22조제4항)

- 선거구 내 거주하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선거법 제22조제3항)

- 장관과 주행정위원회 의원
-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 주의회 또는 준주의회 의원
- 대법원 및 파산법원의 판사 또는 부판사, 유콘주 및 노스웨스트 준주의 대법원 판사
- 이전 총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자
- 선거 직전 회기 또는 선거기간 중 의회에서 일하는 자
- 임명되기 전 7년 이내에 선거법·국민투표법 또는 주·시 학교이사회 선거와 관련된 주의 법에 따라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

## 수집자료 목록

연번	국가명	형태	수량(점)	내용적 특성	수집처	비고
1	캐나다	PPT	1	퀘벡주 선거절차에 관한 안내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2	캐나다	PPT	1	캐나다 연방선거 절차에 관한 안내	캐나다 선거관리청	
3	캐나다	PPT	1	캐나다 선거법 조사에 대한 안내	캐나다 선거관리청	
4	캐나다	사진	1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출입증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5	캐나다	사진	1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소개 및 투표절차 설명 장면	퀘벡주 선거관리기관	
6	캐나다	사진	3	퀘벡 장탈롱주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현수막	퀘벡주	
7	캐나다	사진	1	캐나다 선거관리청 투표함 전시 사진	캐나다 선거관리청	
8	캐나다	사진	1	캐나다 선거관리청 투표용지 전시 사진	캐나다 선거관리청	
9	캐나다	사진	1	역대 캐나다 선거관리청장 사진	캐나다 선거관리청	
10	캐나다	사진	1	캐나다 선거관리청 책자 전시 사진	캐나다 선거관리청	
11	캐나다	사진	1	캐나다 선거관리청 소개 및 캐나다 연방선거 관련 설명 장면	캐나다 선거관리청	

※ 별도 파일 첨부